

이 신구조문대비표는 텍스트 분석시스템이 자동생성한 내용을 사용자편의를 위하여 게시하는 것으로, 무결한 자료가 아니오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| 여비규정 발령일:2022.03.21 | 여비규정 발령일:2022.05.16 |
|---|--|
| 제5조 (여비지급 기준) (생 략) | 제5조 (여비지급 기준) (현행과 같음) |
| <p>① 우임은 철도운임·선박운임·항공운임·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,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, 선박운임은 수로(水路)여행에,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, 자동차운임은 철도와의 유통여행에 각각지급한다.</p> <p>②·③(생 략)</p> <p>④ 우임·일비·숙박비·식비의 지급 단가는 국내 출장의 경우 별표 1의 단가를 적용하고 해외 출장의 경우 별표 2의 단가를 적용한다. <별표개정 2017.08.08., 신설 2013.01.02></p> | <p>① 유임은 철도운임·선박운임·항공운임·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,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, 선박운임은 수로(水路)여행에,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,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유통여행에 각각 지급한다. 국내 출장 시 자동차운임은 철도운임을 한도로 하며, 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가용 승용차만 이용해야 하는 경우 여로비 및 통행료를 심비 지급(한도 초과 가능)할 수 있다.</p> <p>②·③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유임·일비·숙박비·식비의 지급 단가는 국내 출장의 경우 별표 1의 단가를 적용하고 해외 출장의 경우 별표 2의 단가를 적용한다. 다만 출장지의 숙박요금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 요금이 숙박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숙박비 상한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숙박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.</p> |
| 부칙 | 부칙 |
| .<신설> | <u>부 칙</u> |
| .<신설> | <u>≤2022. 5. 16.≥</u> |
| .<신설> | <u>(17) 이 규정은 2022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개정 규정(제5조 제1항, 제4항)은 2022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.</u> |